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-83호
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【면목역세권·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】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된 면목역세권 및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8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면적(m ²)	비고
1	면목본동 542-7번지 일원	72,683.4	가칭)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	면목3-8동 572-1번지 일원	63,767.6	가칭)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제한사유
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- 나.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

3. 제한대상행위

- 가. 건축물의 건축
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
 -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 - ※ 예외사항 :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허용
- 나. 토지분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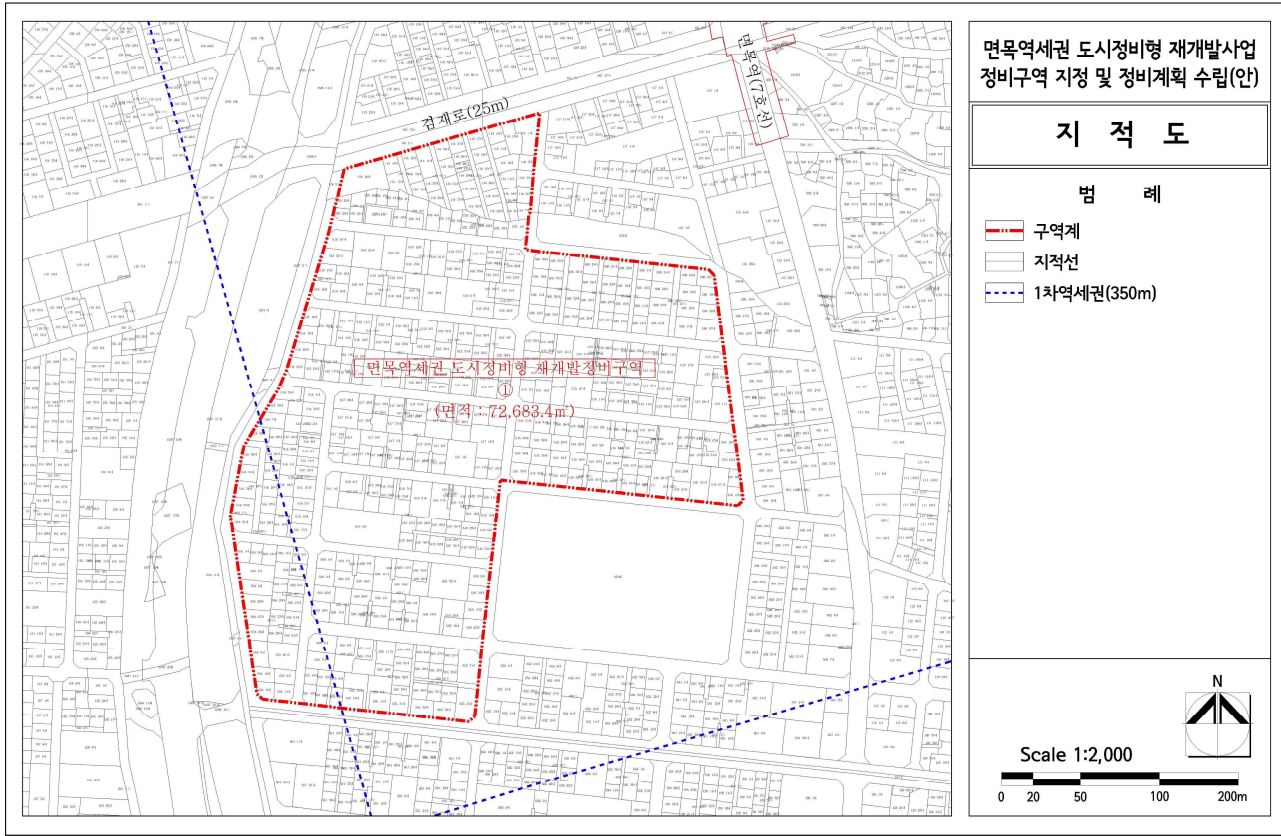
- 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)
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)

- 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 (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- 6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주택개발추진단(☎2094-6892~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붙임 (행위제한 지형도면)

○ 면목본동 542-7번지 일원 [가칭]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

○ 면목3·8동 572-1번지 일원 [가칭]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